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에 의거 수급자격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요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2. 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명령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불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 기간: 2024. 2. 14. ~ 2023. 2. 28.(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정철수(Tel. 053-605-95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정○성	590411	대구시 달성군 (이하 생략)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명령	수급자격 불인정 따른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폐문부재

※ 본 건에 대한 문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정철수(Tel. 053-605-95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